♠박사과정 조교 의무봉사제 기준♤

- 조교수당을 지급받는 박사과정 학생은 **재학 중 1학기 이상**을 의무적으로 소속부서 또는 GIST대학에서 조교로 근무해야 한다.
- 재학기간은 조교수당을 지급받는 **입학 후 4년차** 까지 해당한다.
- 인정범위

1) 유급조교 : 학생대표/부대표, 전산장비 조교, 과목 조교(수강생 30명 이상 기준)

2) GIST대학 수업 및 실험 조교

3) 무급조교 : 담당교수님이 지정한 과목의 조교(수강생 30명 미만일지라도 인정)

- 랩대표 및 석사과정 재학시 수행한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는다.

School office of Mechatronics